

2021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제2408호
- 다. 제출일자: 2021. 5. 25.
- 라. 회부일자: 2021. 5. 31.

2. 제안사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예치금 4,289백만원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적립할 예정으로,
- 나.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들의 복리증진 등으로 집행하고자 '21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수입 및 지출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목	당초 (A)	변경 (B)	증감 (B-A)	항목	당초 (A)	변경 (B)	증감 (B-A)
합계	35,133	40,922	5,789	합계	35,133	40,922	5,789
전입금	27,821	27,821		정책사업 (비용자성 사업비)	29,655	31,403	1,748 (5.9%)
예치금 회수	5,144	9,433	4,289	재무활동 (예치금)	5,478	9,519	4,041 (73.8)
예탁금 원금회수	2,000	3,500	1,500	예탁금	-	-	
이자수입	168	168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요

-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변경안은 지출계획 중 재무활동(예치금)에서 당초 예산 대비 73.8%인 40억 4천1백만원을 증액시키는 등 총 57억 8천9백만원 증액시키는 것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검토의견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에 따라 1996년부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과 복리증진을 위해 운용되고 있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④ (생략)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동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전년도이월금 및 이자수익 등으로 조성되어 난방비, 주민협의체운영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주민복지증진사업비 및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등의 지원과 적립금 등에 사용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¹⁾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20%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²⁾에서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를 정책사업과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 경비 각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변경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개정 사항〉

현행	변경
3. 기금운영계획의 수립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기금법」 제11조) *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서 구분하고 있는 주요항목의 정책사업을 의미(정책사업재무활동행정운영경비 포함)	3. 기금운영계획의 수립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기금법」 제11조) *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서 구분하고 있는 주요항목의 정책사업에 해당(정책사업재무활동행정운영경비 각각을 의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별표10'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참조)

- 본 변경안은 20%를 초과하여 변경된 재무활동비에 대해 개정된 기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으로는 2020년도 기금 결산 결과로 발생한 잉여금(42억 8천9백만원)과 예탁금(15억원) 등의 증액분 57억 8천9백만원을 재무활동비(40억 4천1백만원)와 정책사업비(17억 4천8백만원)로 지출하는 것으로 본 변경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음.

1)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행정안전부 예규 제119호, 2020. 7. 21. 시행

다만, 최근 3년간 주민지원기금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일정수준의 잉여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최근 3년간 주민지원기금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	2020년	2019년	2018년
계획	난방비	6,463	6,463	7,621
	운영비	727	703	663
	주민지원 사업비	27,844	26,477	24,157
	계	35,034	33,643	32,441
결산	난방비	6,006	5,941	6,370
	운영비	480	565	501
	주민지원 사업비	23,690	23,881	20,463
	계	30,176	30,387	27,334
잔액 (잉여금)	난방비	457	522	1,251
	운영비	247	138	162
	주민지원사업비	4,154	2,596	3,694
	합계	4,858	3,256	5,107